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이사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사회 중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합한 윤리의식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사와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상법」 등의 관련 법규와 글로벌 기준을 준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면 이사로서의 자격과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밖에도 사외이사가 회사와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없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이사회 참석률이 75% 이상인 자
4.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이 아닌 자
5. 회사(현재 및 과거)의 외부감사 회사, 그 계열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 또는 관계 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회사(최대주주, 계열회사 포함)와 중요한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법률사 무소 포함)의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 아닌 자
7. 그 밖에 법률·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자